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은 평 구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시 은평구청장 귀하

2022년 4월 19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은평구 의회로부터 은평구 2021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2년 3월25일부터 2022년 4월19일까지(26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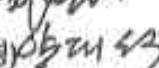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1회계연도 은평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은평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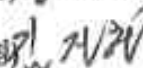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은평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세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황재원 (서명) 

검사위원 양대석 (서명) 

검사위원 김진현 (서명) 

검사위원 조강현 (서명) 

【 목 차 】

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2
2. 기금의 결산	9
3. 재무제표의 결산	10
4. 성과보고서	12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4

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재정총괄 분야	17
2. 세입결산 분야	20
3. 세출결산 분야	22
4. 재무결산 분야	26
5. 성과보고서 분야	29

III. 전년도 지적(권고)사항 조치 내용31

I . 결산검사 총괄 현황

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A-B)
합 계	1,269,758,415	1,309,879,028	1,089,546,702	220,332,326
일 반 회 계	1,249,014,822	1,288,395,413	1,076,279,461	212,115,952
특 별 회 계	20,743,593	21,483,615	13,267,241	8,216,374

(단위 : 천원)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이 월 금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220,332,326	31,783,215	39,784,705	41,619,232	21,803,469	85,341,705
일 반 회 계	212,115,952	31,783,215	39,752,705	41,619,232	21,760,378	77,200,422
특 별 회 계	8,216,374	-	32,000	-	43,091	8,141,283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09,879,028천원으로 예산현액 1,269,758,415천원보다 40,120,613천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3.2%인 1,089,546,702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0,332,326천원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비 31,783,215천원, 사고이월비 39,784,705천원 및 계속비 41,619,233천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1,803,469천원을 공제한 85,341,704천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음.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1,249,014,822	1,314,269,971	1,288,395,413	2,077,748	23,796,810
결산확인액	1,249,014,822	1,314,269,971	1,288,395,413	2,077,748	23,796,810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1,288,395,413천원은 예산현액의 103%로써 39,380,591천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재산세·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03%이며 불납결손액은 2,077,748천원으로 주로 시효소멸이며, 미수납액은 23,796,810천원으로 대부분 무재산 및 납세태만 등으로 인한 것임.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288,395,413	1,288,395,413	0

본 회계연도 세입 장부는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과 일치함.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예산대비징수결정율	징수결정대비수납율	징수결정대비불납결손율
2021년	1,249,014,822	1,314,269,971	1,288,395,413	2,077,748	105.2%	98.0%	0.2%
2020년	1,229,036,937	1,297,196,873	1,268,545,410	940,794	105.5%	97.8%	0.1%
증 감	19,977,885	17,073,098	19,850,003	1,136,954	-0.3%	0.2%	0.1%

2020회계연도에 비해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징수 활동의 강화로 전년도 수납액 1,268,545,410천원 보다 19,850,003천원이 많은 1,288,395,413천원이 수납됨.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940,794천원 보다 1,136,954천원이 증가된 2,077,748천원으로, 시효소멸이 2,067,031천원, 무재산 등이 10,717천원임.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249,014,822	1,314,269,971	1,288,395,413	2,077,748	23,796,810
지방세수입	107,857,403	115,246,610	114,336,302	36,788	873,520
세외수입	52,014,299	81,637,063	56,672,813	2,040,960	22,923,290
지방교부세	29,040,200	29,593,691	29,593,691	-	-
조정교부금등	220,100,707	247,794,405	247,794,405	-	-
보조금	640,961,765	641,361,753	641,361,753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9,040,448	198,636,449	198,636,449	-	-

세목별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8.87%인 114,336,302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4.4%인 56,672,813천원, 지방교부세는 29,593,691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19.23%인 247,794,405천원, 보조금은 49.78%인 641,361,753천원 수납됨.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결 산 액	1,152,498,847	1,249,014,822	1,076,279,461	113,155,152	21,760,390	37,819,819
결산확인액	1,152,498,847	1,249,014,822	1,076,279,461	113,155,152	21,760,390	37,819,819
차 액	0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 1,152,498,847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96,515,97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49,014,822천원이고, 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63%인 7,895,426천원이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부족 등임.

이체는 예산현액의 3.92%인 49,005,994천원으로써 2021. 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에 의한 것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0.48%인 6,034,995천원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2%에 해당하는 1,076,279,461천원이며 이월액은 113,155,152천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 연기 등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03%에 해당되는 37,819,819천원으로 주요사유는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정산잔액 등에 기인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076,279,461	1,076,279,461	0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함.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0회계 연도지출액	2021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금 액	비율
합 계	1,070,007,760	1,249,014,822	1,076,279,461	86.2%	6,271,701	0.6%
일반공공행정	174,922,813	165,426,363	136,215,120	82.3%	-38,707,693	-22.1%
공공질서및 안전	2,571,109	3,210,601	2,830,336	88.2%	259,227	10.1%
교 육	12,724,234	17,301,097	15,085,397	87.2%	2,361,163	18.6%
문화 및 관광	28,344,307	60,976,717	41,392,871	67.9%	13,048,564	46.0%
환 경	47,495,204	97,881,016	55,607,716	56.8%	8,112,512	17.1%
사 회 복 지	573,565,152	621,367,899	584,456,097	94.1%	10,890,945	1.9%
보 건	21,217,168	29,700,039	25,131,671	84.6%	3,914,503	18.4%
농림해양수산	1,652,029	3,975,108	3,526,611	88.7%	1,874,582	113.5%
산업·중소기업	37,946,736	19,978,950	16,333,108	81.8%	-21,613,628	-57.0%
교통 및 물류	22,624,404	33,765,053	25,902,799	76.7%	3,278,395	14.5%
국토 및 지역개발	18,874,210	50,052,380	35,387,129	70.7%	16,512,919	87.5%
예비비 및 기타	128,070,394	145,379,599	134,410,606	92.5%	6,340,212	5.0%

본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지출액은 1,076,279,461천원으로 전년대비 0.6%인 6,271,70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전체 지출액의 54.3%인 584,456,097천원을 집행하여 전년대비 1.9%인 10,890,945천원이 증가하였음.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113.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87.5%)임.

(3) 특별회계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20,743,593	34,137,986	21,483,615	126,241	12,528,130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213,712	1,483,545	1,243,558	-	239,987
	주차장	19,529,881	32,654,441	20,240,057	126,241	12,288,143
결산확인액		20,743,593	34,137,986	21,483,615	126,241	12,528,130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21,483,615천원은 예산현액의 103.57%로써 740,022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음.

○ 결손처분

불납결손액은 126,241천원으로 주로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임.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21,483,615	21,483,615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함.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19,543,593	20,743,593	13,267,241	32,000	43,091	7,401,261
특별 회 계	의료급여금	1,213,712	1,213,712	1,168,003	0	40,593	5,116
	주 차 장	18,329,881	19,529,881	12,099,238	32,000	2,498	7,396,145
결산확인액		19,543,593	20,743,593	13,267,241	32,000	43,091	7,401,261
차 액		0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19,543,593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액 1,200,000천원을 포함하여 20,743,593천원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3.96%에 해당하는 13,267,241천원이며, 이월액은 32,000천원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3,267,241	13,267,241	0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함.

2. 기금의 결산

2021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29,800,214	569,422	10,914,575	10,345,153	30,369,636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5,770,041	-399,290	61,685	460,974	5,370,75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701,598	1,920,587	1,920,587	-	3,622,185
중소기업육성기금	4,624,109	-1,022,078	5,565,087	6,587,165	3,602,031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3,568,983	-26,137	134,895	161,032	3,542,847
재난관리기금	2,504,965	77,499	1,075,519	998,020	2,582,464
도로굴착복구기금	2,088,340	235,434	1,236,001	1,000,567	2,323,774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2,144,951	-204,063	43,744	247,807	1,940,888
자활기금	1,912,732	-71,057	55,313	126,370	1,841,675
장애인등의편의 시설설치촉진기금	1,509,330	50,411	163,521	113,110	1,559,742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963,544	30,417	54,939	24,522	993,961
양성평등기금	910,920	-21,257	10,918	32,175	889,663
노인복지기금	802,858	3,422	12,366	8,944	806,280
옥외광고발전기금	615,974	-89,775	359,868	449,643	526,199
식품진흥기금	532,465	-55,208	66,352	121,560	477,257
남북교류협력기금	149,402	140,515	153,779	13,264	289,917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9,800,214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0,914,575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10,345,153천원을 공제한 30,369,636천원으로 전년대비 569,422천원 증가하였음.

3. 재무제표의 결산

2021회계연도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1	2020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906,418,555	1,828,114,177	78,304,378	4.3%
I. 유 동 자 산	289,803,095	279,325,226	10,477,869	3.8%
II. 투 자 자 산	16,474,354	16,616,625	-142,271	-0.9%
III. 일 반 유 형 자 산	286,961,049	274,397,272	12,563,777	4.6%
IV. 주 민 편 의 시 설	404,715,705	369,066,140	35,649,565	9.7%
V. 사 회 기 반 시 설	888,382,749	874,353,457	14,029,292	1.6%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0,081,603	14,355,457	5,726,146	39.9%
부 채	53,008,670	42,912,162	10,096,508	23.5%
I. 유 동 부 채	28,423,248	19,288,388	9,134,860	47.4%
II. 장 기 차 입 부 채	-	-	-	-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24,585,422	23,623,774	961,648	4.1%
순 자 산	1,853,409,885	1,785,202,015	68,207,870	3.8%
I. 고 정 순 자 산	1,584,066,851	1,519,324,664	64,742,187	4.3%
II. 특 정 순 자 산	29,668,168	30,561,015	-892,847	-2.9%
III. 일 반 순 자 산	239,674,866	235,316,336	4,358,530	1.9%

2021회계연도 은평구의 자산은 1,906,418,555천원으로 전년도인 1,828,114,177천원보다 78,304,378천원(4.3%)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민편의시설 35,649,565천원(9.7%) 및 사회기반시설 14,029,292천원(1.6%)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2021회계연도 은평구의 부채는 53,008,670천원으로 전년도인 42,912,162천원보다 10,096,508천원(23.5%) 증가하였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등의 증가로 유동부채 9,134,860천원(47.4%)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1	2020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242,959,114	213,894,065	29,065,049	13.6%
가. 사업총원가	869,464,120	897,257,565	-27,793,445	-3.1%
나. 사업수익	626,505,006	683,363,500	-56,858,494	-8.3%
II. 관리운영비	138,877,213	141,685,798	-2,808,585	-2.0%
III. 비배분비용	9,835,017	6,890,798	2,944,219	42.7%
IV. 비배분수익	24,272,915	25,193,212	-920,297	-3.7%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367,398,429	337,277,449	30,120,980	8.9%
VI. 일반수익	428,543,622	384,938,096	43,605,526	11.3%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61,145,193	-47,660,647	-13,484,546	28.3%

은평구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869,464,120천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626,505,006천원을 차감한 242,959,114천원이며,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친환경적인 청소관리사업’ 31,106,497천원과 ‘어르신복지 증진사업’ 31,136,169천원임.

또한, 2021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35,982,214천원과 경비 2,894,999천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감가상각비 8,336,186천원, 대손상각비 1,219,061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경상세외수익 2,878,550천원, 임시세외수익 7,456,954천원, 기타수익 13,937,411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1회계연도 은평구의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61,145,193천원으로 전년도의 47,660,647천원 보다 13,484,546천원(28.3%)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지방세수익 및 정부 간 이전수익 증가로 인한 것임.

4. 성과보고서

은평구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1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함.

은평구는 본 회계연도의 ‘북한산 큰 숲, 내일을 여는 은평’이라는 희망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1개)-정책사업목표(72개)-단위사업(19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7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함.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B/A)
계	11	72	173	121	52	69.9%
감사담당관	1	1	3	2	1	66.7%
협치담당관	1	1	4	2	2	50%
홍보담당관	1	1	3	2	1	66.7%
행정안전국	1	12	30	24	6	80%
교육문화국	1	12	23	14	9	60.9%
주민복지국	1	8	20	11	9	55%
재정경제국	1	8	13	12	1	92.3%
교통환경국	1	10	25	17	8	68%
도시건설국	1	10	29	27	2	93.1%
보 건 소	1	8	21	8	13	38.1%
구의회사무국	1	1	2	2	0	100%

은평구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73개의 성과지표 중 121개의 지표는 100% 및 그 이상을 달성한 반면 52개의 지표는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음.

성과보고서의 작성 지침에 따르면 당초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하고, 성과보고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목표 달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실한 성과분석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채권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17,117,001	6,538,608	5,544,675	18,110,934
일반회계		7,829,749	275	452,128	7,377,896
기 금		9,287,252	6,538,333	5,092,547	10,733,038
사 회 적 경 제 활 성 화 기 금	사 회 적 경 제 활 성 화 기 금	337,189	246,522	170,380	413,331
	중소기업육성기금	8,722,450	6,267,290	4,857,030	10,132,71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227,613	24,521	65,137	186,997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110,934천원으로 확인됨.

(2) 채무 : 해당사항 없음

(3) 공유재산

2021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447,950,166	136,439,479	8,713,796	1,575,675,849
행 정 재 산	공용재산	402,756,468	52,199,007	726,906	454,228,570
	공공용재산	1,029,495,030	84,004,697	6,445,613	1,107,054,113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	-	-	-
	소 계	1,432,251,498	136,203,704	7,172,519	1,561,282,683
일반재산		15,698,668	235,775	1,541,277	14,393,166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27,725,683천원이 증가한 1,575,675,849천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무상귀속 등으로 도로가 증가하고 어린이집 신축 등으로 행정재산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재산의 경우 재개발구역을 포함한 토지매각 등으로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4)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수 량	1,330	162	48	1,444
금 액	11,605,767	1,855,677	818,559	12,642,885

2021년도말 현재액은 12,642,885천원으로 당해연도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855,677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818,559천원이 감소하여 전년도에 비해 1,037,118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전년도와 비교하여 주요 증가 물품은 승용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 노면청소차 등임.

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재정총괄 분야

□ 잉여금의 효율적 관리

【현황 및 문제점】

최근 3년간 예산 및 잉여금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평균 증감률
예	산	916,558	1,250,990	1,269,758	17.7%
세	입	962,563	1,290,466	1,309,879	16.7%
세	출	784,331	1,079,732	1,089,547	17.9%
잉 여 금	계	178,232	210,734	220,332	11.2%
	이	83,884	97,316	113,187	16.2%
	명	28,757	29,457	31,783	5.1%
	사	25,076	33,530	39,785	26.0%
	계	30,051	34,329	41,619	17.7%
	보	7,715	16,065	21,803	68.1%
	순	86,633	97,353	85,342	-0.7%
예산현액 대비 잉여금 비율		19.4%	16.8%	17.4%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1,309,879백만원, 총세출은 1,089,547백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220,332백만원임.

세입과 세출의 평균증감률은 각각 16.7%, 17.9%로 은평구의 재정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잉여금은 220,332백만원으로 평균증감률은 11.2%이고 예산현액 대비 (220,332백만원/1,269,758백만원) 17.4%로, 전년 대비(210,734백만원/1,250,990백만원) 16.8%보다 0.6% 증가하였음.

이월금은 113,187백만원으로 평균증감률은 16.2%이며, 이 중 명시이월 31,783백만원 28.1%, 사고이월 39,785백만원 35.1%, 계속비이월 41,619백만원 36.8%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보조금반납금은 21,803백만원으로 평균증감률은 68.1%로 2020년도 16,065백만원에 비해 35.7% 증가하였음.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85,342백만원/1,269,758백만원) 6.72%로, 전년 대비(97,353백만원/1,250,989백만원) 7.78%보다 1.06%감소 하였음.

이전 결산 검사 시 개선 권고된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관리’ 부분은 잘 준수되어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은 증가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 기간, 규모, 발주 방법 등의 사업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명시·사고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은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산부서에서는 세입·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단계적 이행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구분	2017년	2018	2019	2020	2021년
재정자립도	17.91	16.40	16.32	13.90	14.35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 × 100(%)

은평구의 2021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14.35%로 전국적인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서울시 소속 25개 구청의 재정자립도와 비교해 볼 때 하위권에 속해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현재 은평구는 세출 규모에 비해 자체수입 규모가 절대적으로 적어 국가나 시의 지원 없이는 세출 및 세입 균형을 이룰 수 없는 형편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세출 규모를 자체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은평구의 재정자립도는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은평구의 발전과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단계적 이행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반복적이고 경상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만으로는 은평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어렵습니다. 은평구만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활용하여 세입 확대를 위한 우량기업 유치전략을 기획하고, 동시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세입 증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2. 세입결산 분야

□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

(단위:천 원, %)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미수납액	미수납률
합계		215,736,007	177,207,078	82.1%	36,324,940	16.8%
일반회계	소계	196,883,673	171,009,115	86.9%	23,796,810	12.1%
	지방세수입	115,246,610	114,336,302	99.2%	873,520	0.8%
	세외수입	81,637,063	56,672,813	69.4%	22,923,290	28.1%
특별회계	세외수입	18,852,334	6,197,963	32.9%	12,528,130	66.5%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수입 수납률은 99.2%(114,336,302천 원 /115,246,610천 원)로 양호하나, 세외수입 수납률은 일반회계가 69.4%(56,672,813천 원/81,637,063천 원), 특별회계가 32.9%(6,197,963천 원/18,852,334천 원)로 지방세수입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개선 및 권고사항】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경우 일반회계가 22,923,290천 원, 특별회계가 12,528,130천 원으로 총 35,451,420천 원에 이르므로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철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등을 통해 수납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미수납액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책 및 적극적인 회수 노력과 더불어 회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여 미수납액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감소시켜 나가시길 권고드립니다.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 최소화

【현황 및 문제점】

세입금 환급 현황

(단위:천원)

세목	환급액	사 유 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법령개정	기타
합 계	789,004	643,145 (81.5%)	57,709 (7.3%)	26,523 (3.4%)	36,711 (4.7%)	2,272 (0.3%)	22,644 (2.9%)
일반회계	770,239	643,145	40,206	26,523	36,711	2,272	21,382
특별회계	18,765	-	17,503	-	-	-	1,262

세입금 환급은 세입금의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며 그 사유는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미등기 그리고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기타로 구분됨.

2021회계연도 환급총액은 789,004천원이며 이중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은 643,145천원으로 전체의 81.5%에 해당함.

행정기관 착오 환급 현황

(단위:천원)

세목		금액	비고
합 계		643,145	
지방세수입	등록면허세	2,669	
	재산세등	60,589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499	
	기타사용료	1,583	
	그외수입	165	
	이행강제금	3,856	
	변상금	36,385	
	기타과태료등	658	
보조금		536,741	

【개선 및 권고사항】

세입금의 환급은 행정의 신뢰도 저하와 행정력 낭비라는 측면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 원인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 부과 및 체납관리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을 시행하여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액을 줄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3. 세출결산 분야

□ 예비비 사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철저

【현황 및 문제점】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천원, %)

연도별	예비비예산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예비비 대비 지출비율
2021	12,493,583	6,297,563	6,034,995	262,568	48.3%
2020	19,592,979	6,499,276	5,207,957	1,291,319	26.6%
2019	9,629,522	575,202	459,060	116,142	4.8%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액 대비 구성비
소계	6,297,563	6,034,995	262,568	100%
일반예비비	5,142,990	5,102,197	40,793	84.5%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54,573	932,798	221,775	15.5%

2021회계연도 은평구는 12,493,583천원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그의 48.3%에 해당하는 6,034,99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84.5%인 5,102,197천원은 일반예비비로, 15.5%에 해당하는 932,798천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예비비 지출 결정 시에는 그 취지에 맞게 신중히 검토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개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계획으로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총 20건 290,232천원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였음.

예산편성 후 잔액 미집행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합 계		290,232
행정지원과	해외 비교연수 및 공무출장	39,460
기획예산과	은평내일자문단 운영	2,000
	지속가능발전 추진 운영	5,920
자치안전과	구민알뜰장	2,330
	을지연습	38,328
문화관광과	은평 역사문화 탐방교실	600
	통일로 문학 페스티벌 운영	32,500
	물빛마을 음악 놀이터(참여예산)	20,000
가족정책과	우리동네 어디든 놀이터(놀GO! 크GO!) 운영	20,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식개선 교육	450
어르신복지과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1,480
사회적경제과	대부업관리	400
일자리경제과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	1,348
환경과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	6,000
건강증진과	은평건강관리센터 운영	14,895
	2021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28,568
보건의료과	척추측만증 학교검진	12,990
보건지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한방 프로그램 운영)	7,100
	재택의료서비스사업	15,000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지원	40,863

【개선 및 권고사항】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 경정 예산편성 시 감추경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하여 집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

【현황 및 문제점】

최근 3년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 잔액비율
2021년	870,281	763,467	74,380	32,434	3.7%
2020년	865,470	768,810	69,575	27,085	3.1%
2019년	549,714	497,935	38,455	13,324	2.4%

은평구의 보조금 수령액은 보조금 확보 노력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회계연도에는 763,467백만원을 집행하고 74,380백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32,43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개선 및 권고사항】

은평구의 주요 세입 재원인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보육 지원사업, 어르신 복지사업이 일부 취소되어 보조금 예산이 예상대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나, 일상생활이 빠르게 정상화됨에 따라 향후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4. 재무결산 분야

□ 합리적인 대손설정을 및 대손충당금 적용

【현황 및 문제점】

미수세금 및 대손충당금 현황

(단위:원, %)

구분		채권금액(A)	대손설정율(%)	대손충당금(B)	장부가액(A-B)
보 통 세	미수등록면허세	393,076,530	0.46	1,810,364	391,266,166
	미 수 주 민 세	427,453,350	12.42	53,102,692	374,350,658
	미 수 재 산 세	52,990,160	0.42	222,540	52,767,620
계		873,520,040	6.31	55,135,596	818,384,444

미수세외수입금 및 대손충당금 현황

(단위:원, %)

구분	금액(A)	대손설정율(%)	대손충당금(B)	장부가액(A-B)
미 수 재 산 임 대 료 수 익	291,533,880	0.14	408,147	291,125,733
미 수 사 용 료 수 익	136,969,090	3.94	5,398,336	131,570,754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174,667,030	-	-	174,667,030
미 수 부 담 금	93,551,190	0.84	785,238	92,765,952
미수변상금및위약금	172,627,380	10.31	17,797,883	154,829,497
미 수 과 태 료	25,308,020,540	3.12	790,561,679	24,517,458,861
미수과징금및이행강제금	7,313,099,040	4.86	355,207,713	6,957,891,327
미 수 이 자 수 익	11,396,880	-	-	11,396,880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2,387,119,230	0.66	15,712,089	2,371,407,141
계	35,992,412,340	3.30	1,186,112,597	34,806,299,743

대손충당금은 미수채권 중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액임.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하면 결손경험율을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결손경험율이 1% 미만인 경우에는 대손설정율을 1%로 설정하게 되어 있음. 하지만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1회계연도 결산 수행 시 적용한 대손설정율은 1% 미만인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미수채권의 순회수 가능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차기 결산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부합되게 결손추정율이 1%미만이면 1%를 적용하여 결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적·자본적 지출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 명확화

【현황 및 문제점】

자산 현황(재정상태표)

(단위:원)

구 분	금액	비율	비고
계	1,906,418,555,064	100	
유 동 자 산	289,803,094,760	15.2	
투 자 자 산	16,474,354,378	0.86	
일 반 유 형 자 산	286,961,049,410	15.05	
주 민 편 의 시 설	404,715,704,806	21.23	
사 회 기 반 시 설	888,382,748,583	46.6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0,081,603,127	1.05	

2021회계연도 현재 은평구청의 총 자산규모는 1조 9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을 제외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규모는 1조5천8백억으로 총 자산대비 83%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수리나 보수가 필요하며 단순한 기능유지를 위한 지출이라면 경상적 지출로, 그렇지 않고 기존 자산의 기능 및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이라면 자본적 지출 즉 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하여 회계처리가 되어야 함. 2021회계연도 동안 은평구는 43,471백만원은 경상적 지출로 26,207백만원은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하였음.

현재 재무결산 업무수행 시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가재무회계 운영규정」에는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일정한 기준 없이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전년도와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은평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처리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시기 바라며, 각 부서 담당자들과의 의사소통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일관된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계속성을 제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5. 성과보고서 분야

□ 성과지표 개선 및 현실화

【현황 및 문제점】

2021회계년도 성과 달성률 50% 미만 현황

부서명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 표	실 적	달성률
협치담당관	자원봉사활동 운영실적(봉사활동 인원)	27,500	10,799	39%
가족정책과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 이수자(명)	500	245	49%
생활체육과	각종 대회 지원 횟수(대회수)	90	25	28%
	각종 대회 참가인원수(명)	17,000	1,400	8%
교통행정과	고유명절 차량 무상점검 실적(대)	180	-	0%
환경과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100	49	49%
주거재생과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공모(개)	3	-	0%
보건위생과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점수)	86	-	0%
건강증진과	대사증후군 신규등록자수(명)	3,000	1,051	35%
보건의료과	건강검진사업(명)	1,400	-	0%
	척추측만증 학교검진 사업(명)	4,500	-	0%
	구강보건관리사업(명)	5,150	-	0%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명)	20,300	80	0%

2021회계년도 성과 달성률 200% 초과 현황

부서명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 표	실 적	달성률
가족정책과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운영(명)	17,000	34,785	205%
	가정통신문 외국어번역 서비스(명)	200	886	443%
일자리경제과	은평사랑상품권 발행액(억원)	300	606	202%
교통행정과	여성운전자 자동차문화교실 운영실적(명)	130	2,319	1,784%
건축과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건)	1,300	2,901	223%
보건위생과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80	354	443%

2021회계연도 성과 달성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항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지표를 잘못 선정했거나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결과가 산출되었음. 이는 성과지표 및 그 목표를 형식적으로 산정을 하고 분석한 결과이며, 이제는 일상화된 코로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와 목표를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됨.

또한 200% 초과 달성 항목을 살펴보면 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성과지표 목표를 과도하게 낮게 설정하여 초과 달성하게 됨.

【개선 및 권고사항】

성과보고서는 성과측정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정책사업 및 예산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며 결산서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성과평가 단계에서는 객관적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성과지표의 지속 여부, 개선 방향, 신규지표 개발 등을 다음 연도 성과 계획단계에 환류시켜 내실 있는 성과 계획서 및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성과보고서 지표는 구민의 행정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Ⅲ. 전년도 지적(권고)사항 조치 내용

Ⅲ. 전년도 지적(권고)사항 조치 내용

전년도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분야별, 부서별 조치내용 검사결과 균형 있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월 예산 관리 철저,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과소계상 등 부서별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 되었음.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재정 총괄	균형있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 (순세계잉여금)	○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974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결산 수납액 대비 비중은 7.5%로 전년(9%)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은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초과세입은 공시지가 현실화 및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등에 따른 지방세 증가, 서울시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가산교부에 따른 것이며, ○ 집행잔액은 코로나 방역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사업추진에 제약이 생긴 결과임 ○ 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18%(서울시 자치구 중 22위) 수준으로 특히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 향후 합리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기획예산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입 결산	연도별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 축소	○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으로 인한 예측이 어려운 세입으로 연도별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 파악이 어려움 □ 대여학자금 부담금(이하 순부담금) [반환대상] - (정의) 전년도 대부 실적 및 학생증감율·등록금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용도) 해당기관 재직공무원 대여학자금 대부 시 대부재원으로 사용, 재원 부족 시 기관으로 납입요청(고지)	행정지원과
		○ 징수결정액 대부분이 위탁사업비 정산 금액이고, 사업 집행액과 정산금액이 변동되어 예측이 어려운 세입이므로 연도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파악이 어려움(그 외 일시적인 세외수입 포함)	스마트정보과
		○ 구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보조금지출금반환금과 기타잡수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보조금지출금반환금은 수급자 소득발생으로 인한 자격변동 등으로 수급자에게 환수해야 할 반납금이고, 기타잡수입은 사회보장정보원, LH공사, 교육청에 예탁 및 교부하고 회계연도 마감후 정산된 보조금 반환금으로 수급자 자격 변동에 따른 환수액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추계가 어려운 점, 구 결산시기와 타기관 교부금정산 시기가 불일치 한 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대비 징수 결정액 오차가 발생함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파악을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 차이를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생활복지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입 결산	연도별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 축소	○ 의료급여기금의 세외수입은 의료급여 관련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에 대한 부과분으로 예산편성의 대상이 아니나 수납액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결손 처분 및 적극적인 환수 조치 예정임	생활복지과
		○ 구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지급급여 환수금과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및 교부하고 회계연도 마감 후 정산된 보조금 반환금으로 환수액 및 정산금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 추이가 어려움	장애인복지과
		○ 임시적 세외 수입 징수결정액 중 구일반 지출금반환금은 기초연금 환수금, 보조금 반납금이며, 구일반 기타잡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임 ○ 기초연금 환수금은 수급권 상실 및 과지급, 자격변동 등에 따른 환수액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국시비 매칭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으로 예산추이가 어렵고 결산시기와 타기관 보조금 정산시기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오차가 발생함. - 최근 5년간의 세입통계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예산대비 징수 결정액의 오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음	어르신복지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입 결산	연도별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 축소	○ 체비지 매각의 경우 점유자의 매수 신청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움	도시계획과
		○ 향후 체비지 점유자를 대상으로 대부 계약 체결 시 매각수요 등을 사전 조사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의약업소의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금으로 위반행위 발생 여부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추계가 어려우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5년 평균징수결정액을 반영하여 예산액을 편성하도록 하겠음	보건의료과
		○ 구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위탁사업(치매관리사업) 회계 연도 마감 후 정산된 보조금 반환금으로 환수액 및 정산금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 추이가 어려움	보건지소
		○ 당초 편성된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외 기타수입(그외수입)이 포함되기 때문임	시민교육과
		○ 기타수입(그외수입) 발생 사유 - 주 보조사업자인 학교의 회계기간이 우리구와 달리 익년도 2월 종료되어 사업비 집행잔액이 구 결산 이후로 정산 및 반납처리 됨	
		○ 향후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중간 정산을 통해 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입 결산	연도별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 축소	○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으로 편성된 과징금 외 그외수입이 포함되어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함 -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구 결산 이후로 정산 및 반납처리 되었으며 - 한국전력에서 공공도서관 전기요금 오부과에 따른 환급금 등이 발생하여 기타수입(그외 수입)으로 전기요금 반납 처리되었음 ○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사전 파악을 철저히 하여, 세입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화관광과
		○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등 부과 횟수 규정 삭제를 반영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수적인 세입예산 편성을 지양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음	주거재생과
세입 결산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관리 대책필요	○ 징수율 제고 방안 - 징수보고서를 토대로 세입부서 진도를 징수율 모니터링 - 세입부서목표액 대비 징수율 초과달성 · 전부서 세입목표 설정 후 세입예산 편성 반영 - 부과액 대비 징수율 저조 회계 과목 부서 징수율 제고 · 과징금·이행강제금(건축과, 주거재생과), 의무보험검사와태료(교통행정과)	세무1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입 결산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관리 대책필요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체납 특별징수 및 정리 기간 운영 · 행정제재, 예금압류 및 부동산 공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 · 300만원이상 체납자 징수독려 및 분납유도 ○ 일반회계미수납액 징수방안 - 체납금액별 관리 <table><tr><td>1백만원 이상</td><td>50만~1백만원 미만</td><td>50만원 미만</td></tr><tr><td>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 현장 방문, 부동산 공매 등 강제 징수 방안 검토</td><td>신용조회, 재산조회 등 각종 재산관련 정보를 활용한 채권확보 통한 징수 관리</td><td>매월 납부촉구안내문, 체납고지서 발송 및 분납등 자발적 납부 유도</td></tr></table> ○ 결손처분확행 <table><tr><td>정리보류(불납결손)</td><td>시효완성처리(시효결손)</td></tr><tr><td>지방세징수법 제106조</td><td>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td></tr><tr><td> ○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체납처분(부동산 차압, 예금압류 등)이 불가능한 체납액 ○ 주소지 및 재산이 파악될 때까지 일정 기간을 유보하는 일시적 행정행위 ○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시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실시 </td><td> ○ 무재산 및 생계형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층으로 5년간 재산을 추적하였으나, 체납처분(압류)를 집행할 물건이 없이 <u>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가 완성되어 납세의무 소멸(강행규정)</u> </td></tr></table> - 분기별 또는 수시로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조회로 과감한 결손 처분 및 결손후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 처분 실시	1백만원 이상	50만~1백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 현장 방문, 부동산 공매 등 강제 징수 방안 검토	신용조회, 재산조회 등 각종 재산관련 정보를 활용한 채권확보 통한 징수 관리	매월 납부촉구안내문, 체납고지서 발송 및 분납등 자발적 납부 유도	정리보류(불납결손)	시효완성처리(시효결손)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체납처분(부동산 차압, 예금압류 등)이 불가능한 체납액 ○ 주소지 및 재산이 파악될 때까지 일정 기간을 유보하는 일시적 행정행위 ○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시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실시	○ 무재산 및 생계형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층으로 5년간 재산을 추적하였으나, 체납처분(압류)를 집행할 물건이 없이 <u>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가 완성되어 납세의무 소멸(강행규정)</u>	세무1과
		1백만원 이상	50만~1백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 현장 방문, 부동산 공매 등 강제 징수 방안 검토	신용조회, 재산조회 등 각종 재산관련 정보를 활용한 채권확보 통한 징수 관리	매월 납부촉구안내문, 체납고지서 발송 및 분납등 자발적 납부 유도											
		정리보류(불납결손)	시효완성처리(시효결손)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체납처분(부동산 차압, 예금압류 등)이 불가능한 체납액 ○ 주소지 및 재산이 파악될 때까지 일정 기간을 유보하는 일시적 행정행위 ○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시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실시	○ 무재산 및 생계형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층으로 5년간 재산을 추적하였으나, 체납처분(압류)를 집행할 물건이 없이 <u>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가 완성되어 납세의무 소멸(강행규정)</u>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출 결산	이월 예산 관리 철저	○ 이월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액을 최소화 하겠음 ○ 예산편성 시부터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집행을 점검을 통해 사전행정절차 미비, 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비효율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겠음	기획예산과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	○ 사업진도율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의 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기획예산과
		○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경우 실시설계를 위해 2020년 본예산(시설비)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 9월 사업방식변경 (자체개발→위탁개발)에 따라 2021년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통계목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위탁개발 관련 시설비 사용(전용) 불가 - 2021년 신규예산으로 위탁개발사업을 철저히 진행하겠음	어르신복지과
		○ 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반납금의 경우 구립어린이집 부지 확보시 철저한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를 통해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통보에 의한 매칭비율에 의해 예산이 편성됨	보육지원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출 결산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	- 2020년 보육지원과 예산집행율은 95.4% (이월예산 포함)로 낮지 않으나, 보조금 예산규모가 크므로 통계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예산을 산출하고 요구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보육지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예비비 운용 방안 마련	○ 2020년 예비비 1,058백만을 2021년 200백만으로 감액편성 및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180백만원으로 감액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주차장 적립금은 주차장건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대규모 주차장 건설은 행정 절차를 포함, 사업기간이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임 ○ 2019년부터 계획한 불광2동청사 지하 공영주차장(31억) 및 갈현초 공영주차장(46억)사업이 2022년부터 연차별 집행 예정임	주차관리과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협치담당관
		○ 2020년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해외 비교연수 및公務출장 예산편성액 250,000천원 중 173,000천원을 추가 경정예산으로 삭감('20년 6월)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증세가 하반기까지 지속되어 잔액 77,000천원을 불용함	행정지원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출 결산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 은평내일자문단은 구정 주요정책 추진과 관련한 자문과 평가를 위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분기별 비대면 자문을 통해 운영해왔음 ○ 비대면 운영으로 인해 은평내일자문단 운영비로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었으나, ○ 향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대면회의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기획예산과
		○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예산은 사구비 사업이나 2020년 5월말 시예산 전액 삭감 통보로 구비 예산 미집행 됨 ○ 매년 5월에 시행되던 을지태극연습이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로 1차 연기되고 최종적으로 8월말 비상대비태세 점검으로 대체되면서 을지태극연습이 최종 취소되어 예산 미집행 됨 ○ 상기 2건은 추가경정예산 결정이 끝난 이후 최종 결정되어 추가경정예산 반영이 어려웠음. 이후 비슷한 사유로 미집행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자치안전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출 결산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 두기 단계 변경이 잦아, 사업 추진 가능 여부 예측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 2021년에는 사업 추진 시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을 조기에 선별하여, 추진 불가 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과감히 감추경 하도록 하겠음	문화관광과
		○ 시민생활체육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나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개최되어 전액 미집행되었음 ○ 2021년에는 시민생활체육대회가 미개최됨을 사전에 확인하여 감추경 처리 예정에 있으며, 향후 전액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노력하겠음	생활체육과
		○ 어르신건강증진사업의 경우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어르신 대상 활동성 프로그램, 행사 및 대회 불가능하였음 - 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라 2021년 하반기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노인교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수행처(종교시설) 활동 제약 및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였음 - 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라 2021년 하반기 노인교실 개강 및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어르신복지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출 결산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경우 실시설계를 위해 2020년 본예산(시설비)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 9월 사업방식변경(자체개발→위탁개발)에 따라 2021년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통계목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위탁개발 관련 시설비 사용(전용) 불가 - 2021년 신규예산으로 위탁개발사업을 철저히 진행하겠음	어르신복지과
		○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 -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인해 구청 광장이 선별진료소로 활용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으로 불가피하게 미개최되었음 - 향후 사업 진행 가능성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	알자리경제과
		○ 해당 사업은 남녀공간 분리가 안 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을 받을 시 일정 기간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운영하게 되어 있어 구에서 지원하는 개방화장실을 늘리고자 사업을 진행함 ○ 그러나 기존 운영 중인 24개소의 개방화장실은 이미 분리되어있고 민간화장실 또한 분리되어있거나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주민 신청이 없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관련 예산 편성하지 않음 ○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충분한 여론 수렴 및 실행 가능성을 조사 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임	자원순환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출 결산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예산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내실 있게 집행하겠음	주거재생과
		○ 주거재생과 주관 사업인 ‘수색동 구름다리 햇빛마을사업’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계획이 보류됨에 따라, 2019년 예산확보 되어 2020년 명시이월한 해당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불용함 ○ 향후에는 관련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공원녹지과
		○ 코로나19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감추경을 통해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건강증진과
		○ 코로나19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감추경을 통해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보건의료과
		○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외래치료지원제) - 국/시/구(50/25/25)매칭사업으로 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중위소득 65% 이하), 진단명 등 선정기준 정해져 있음. 2020년 선정기준의 범위가 매우 좁고 행정명령 받은 자가 없어 편성된 예산 전액 미집행함	보건지소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출 결산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 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 관련 선정기준 개정 의견 제출하여 완화됨. · 응급·행정입원은 중위소득의 65% 이하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발병초기 정신질환자, 외래치료지원비는 중위소득의 65% 이하 → 80% 이하 - 본 사업은 국·시비·구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전용을 할 수 없으나 추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 신청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자 함	보건지소
		○ 치매어르신 기억극장 운영 - 폐쇄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 코로나19로 부득이 사업 포기하여 예산 전액을 미집행함 - 2021년 여전히 실행 가능성이 낮아 예산 편성하지 않음	보건지소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 지원 - 국/시/구(50/25/25)매칭사업으로 자치구 추가경정예산 종료 후 확정내시 및 예산 배정됨 - 자치구 추가경정 종료됨을 서울시에 알렸으나 일괄 지급된다고 하여 배정 되었으며 매칭 하지 못해 전액 미집행함	보건지소
	보조금 사업의 집행 제한 사유 확인 철저	○ 돌봄SOS센터는 전액시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구 돌봄사각지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825,674,000원 중 집행잔액 없이 편성 시비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실제 보조금 수령액은 825,673,500원으로 집행시 차액 500원이 구비로 초과 지출됨. 향후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보조금 실 수령액을 원단위로 대조 확인하여 집행을 철저히 하겠음	복지정책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기금 결산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및 존치 필요성 재검토	○ 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함 ○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14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성과분석 및 자체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수입이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자체수입 형성 방안을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일부 집행률이 낮은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하여 통합·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기획예산과
		○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제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구 조례에 따라 기금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이 불가하므로 50억원 초과 시까지는 지출없이 적립할 예정임	기획예산과
		○ 노인복지지금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경로당·복지관에서 사업수행 및 변경이 불가능하였음 ○ 2021년도 사업은 활동성 프로그램의 경우 코로나 추이에 따라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중임 ○ 코로나19 극복 이후 어르신 대상 활동성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비대면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노인복지기금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어르신복지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기금 결산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및 존치 필요성 재검토	○ 사회적경제기업(조직)이 대부분 자본 및 규모가 작아 융자신청이 저조하여 융자 한도 기준 조정 및 융자금리 경감 등 조건을 완화하고 서류를 간소화하여 융자신청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사회적경제기업(조직)을 대상으로 기금 융자 사업 안내문 발송하였으며 소규모의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기금 융자 사업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 아울러 기존 계획대로 융자사업을 진행하여 결과 검토 후 융자조건 완화 및 홍보 강화 등의 방법을 모색할 예정	사회적경제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존치 필요 ○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저소득층 자활 역량 강화, 자활기업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 발굴 및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음	생활복지과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홍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함 2021년에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등에 금98,000천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 협의, 차량 구매비 지원 등에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 목적에 맞게 적극 집행할 예정임	장애인복지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기금 결산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및 존치 필요성 재검토	○ 기금결산 사용비율 산정방식 조정 [2019 회계연도 결산 의견서] <table border="1"> <tr> <td>사용액 (‘19.지출액)</td> <td>÷</td> <td>‘19.수입액 (이자, 예치금, 융자금회수)</td> <td>= 사용비율</td> </tr> <tr> <td>34,507,000</td> <td>÷</td> <td>454,476,440</td> <td>= 7.59%</td> </tr> </table> [2020 회계연도 결산 의견서] <table border="1"> <tr> <td>사용액 (지출액)</td> <td>÷</td> <td>‘20.연도말조성액 (전년도말조성액 + 이자, 융자금상환 - 지출액)</td> <td>= 사용비율</td> </tr> <tr> <td>18,796,600</td> <td>÷</td> <td>963,544,357</td> <td>= 1.95%</td> </tr> </table> ○ 결산의견서의 기금 사용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2019회계연도 결산시에는 기금재원인 예치금을 포함하여 산출하였고, 2020회계연도 결산시에는 전년도잔액에서 이자, 융자금상환액의 수입을 더하고 당해연도 지출액을 뺀 금액으로 사용비율을 산출하고 있어 정확한 기금사용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통일된 ‘사용비율산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기금재원인 예치금을 제외하고 수입액 (이자, 융자금상환액)으로 사용비율 재산정시 2020회계연도 기금 사용비율은 23%임 [2020회계연도 기금 사용비율 재산정] <table border="1"> <tr> <td>사용액 (지출액)</td> <td>÷</td> <td>‘20.수입액 (이자, 융자금 상환)</td> <td>= 사용비율</td> </tr> <tr> <td>18,796,600</td> <td>÷</td> <td>82,371,517</td> <td>= 23%</td> </tr> </table>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기금 예치금(419,969천원)	사용액 (‘19.지출액)	÷	‘19.수입액 (이자, 예치금, 융자금회수)	= 사용비율	34,507,000	÷	454,476,440	= 7.59%	사용액 (지출액)	÷	‘20.연도말조성액 (전년도말조성액 + 이자, 융자금상환 - 지출액)	= 사용비율	18,796,600	÷	963,544,357	= 1.95%	사용액 (지출액)	÷	‘20.수입액 (이자, 융자금 상환)	= 사용비율	18,796,600	÷	82,371,517	= 23%	자원순환과
		사용액 (‘19.지출액)	÷	‘19.수입액 (이자, 예치금, 융자금회수)	= 사용비율																						
		34,507,000	÷	454,476,440	= 7.59%																						
		사용액 (지출액)	÷	‘20.연도말조성액 (전년도말조성액 + 이자, 융자금상환 - 지출액)	= 사용비율																						
18,796,600	÷	963,544,357	= 1.95%																								
사용액 (지출액)	÷	‘20.수입액 (이자, 융자금 상환)	= 사용비율																								
18,796,600	÷	82,371,517	= 23%																								
○ 2020. 3. 19.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의 한도가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기금조성액으로 확대됨에 따라, ○ 2021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조성액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을 편성함 ○ 2022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도 양성평등기금의 존치목적에 맞는 신규사업을 편성하겠음	가족정책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재무 결산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과소계상	○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원가 계상 시, 자산구매가액 이외에도 그 자산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의 지출된 모든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 시켜야 함 - 각 부서에서 자산취득을 위한 분개 시 취득원가를 과소계상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 교육 완료(지출실무 게시판 등)	재무과
	미수세외수입금의 합리적인 대손충당금 설정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효소멸 (5년)이 완성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지속적인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결손 추정율을 향상토록 노력 하겠음	주차관리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별 현재액 장·단기 구분 명확화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반환 시 장·단기 여부(1년 기준)를 최대한 명확히 파악 후 분개 처리에 반영하였음	재무과
성과 보고서	성과보고서의 지표 및 목표설정 개선 필요	○ 비대면 교육이 점차 자리를 잡고 활성화 되어 목표치를 크게 벗어난 성과를 얻음 전년도 인권교육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개선하겠음	감사담당관
		○ 자매도시 교류실적 성과지표는 방문 계획 건수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교류실적이 저조한데 향후 비대면교류(서한문 전달, 지역 특산 물 홍보, 축하 동영상 전달) 건수를 성과지표로 추가 설정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행정지원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성과 보고서	성과보고서의 지표 및 목표설정 개선 필요	○ 코로나19 감염 지속 영향으로 대부분 나라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로 여행이 여의치 않아 코로나 백신접종 일정에 따라 9월 홍보 계획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임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재발급과 발급 여권 맞춤형 등기제를 시행 중이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지역주민 반상회·직능단체 회의, 구소식지, 지역신문, 구홈페이지, 새올 행정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음	민원여권과
		○ 문화관광과의 부서 특성 상 관광 활성화 축제 개최 수, 도서관 이용 인원수 등의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코로나19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2021년 성과평가 시에는 성과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하고 타당한 지표를 발굴하도록 하겠음	문화관광과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체육대회가 취소되거나 미개최되어 성과달성률이 현저히 낮아짐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실정에 맞게 성과지표를 조정하여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생활체육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성과 보고서	성과보고서의 지표 및 목표설정 개선 필요	○ 중소기업인 융자지원(건수) - 코로나19 장기화 및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적을 성과지표에서 제외하고, 은평사랑상품권 발행액으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음	알자리경제과
		○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사업의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성과지표를 상황에 맞게 동영상 조회 수로 새롭게 설정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교통행정과
		○ 전년도 추진실적 및 차년도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표치 달성 가능하도록 점검대상 확대하겠음	건축과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비스만족도 평가 및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미실시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방역 점검 증가로 성과 달성률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였음 ○ 향후 성과목표 설정 시 측정 가능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타당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음	보건위생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성과 보고서	성과보고서의 지표 및 목표설정 개선 필요	○ 정책사업 내 대사증후군 신규 등록자수 (명)은 적절한 성과지표로 판단되나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 달성률이 저조함 ○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성과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건강증진과
		○ 정책사업 내 건강증진사업, 척추측만증 학교검진사업, 구강보건 관리사업,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약물오남용예방교육 등의 성과지표로는 수검자, 교육이수자 등 참여인원은 적절한 성과지표로 판단되나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 달성률이 저조함 ○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성과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보건의료과
		○ 치매선별검진을 2020년도 목표는 10.5%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반기에 목표를 3.5%로 변경하였고 변경사항이 미반영되어 성과보고서에 기재됨 ○ 대사증후군 추구관리율은 첫 검진 후 6개월, 12개월 경과 후 재검진율로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업무 중단 및 방역지침 강화로 방문 검진율이 저조함 2021년도에는 실행 가능한 목표치로 변경 처리할 예정임	보건지소